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금융관계법령” 정의를 신설하면서 현행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사항을 “금융관계법률”로 정비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의 제척기간을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형집행 종료나 면제된 날부터 5년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1호, 안 제84조제2항제3호, 안 제87조의2제1항제4호 등).
-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가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시 청문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6조).
- 현행법의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2조의3 등).

II.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의 등록(2년),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3년)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이른바 결격사유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안 제2조제21호는 처벌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으로 정의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처벌 대상 행위가 추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 규정의 적용 대상인 등록 및 자격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부칙 제3조는 적용례를 통해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선임하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4조는 경과규정을 통해서 이미 등록된 신청 또는 선임된 임원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개의 부칙은 결과적으로 중복 규정이 되므로, 이를 하나의 조항으로 보다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부칙 제3조 적용례는 개정규정을 신규 등록 및 임원 선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 자격자 및 임원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이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짐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칙 제4조의 경과 규정을 남겨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대신, 부칙 제3조의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u>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로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으로 선임(재선임을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삭 제></u>
제4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보

협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및 재직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협계리업자·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